## 서울특별시교육청 조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

(김혜영 의원 발의)

의안 번호 1084 발 의 년 월 일:2023년 08월 14일 발 의 자:김혜영 의원(1명) 찬 성 자:갓석주 고광민 과

자: 강석주, 고광민, 곽향기, 김경훈, 김규남, 김길영, 김영철, 김용일, 김용호, 김원중, 김원태, 김재진, 김지향, 김춘곤, 김태수, 김형재, 남궁역, 남창진, 문성호, 민병주, 박상혁, 박 석, 박영한, 박춘선, 박환희, 서상열, 송경택, 신복자, 옥재은, 유만희, 유정인, 윤기섭, 윤영희, 이경숙. 이민석. 이봉준. 이상욱, 이숙자, 이종배, 이종태. 이종화. 이효원. 이희원, 임춘대, 정지웅, 채수지, 최민규, 최진혁, 홍국표, 황철규 의원(50 명)

## 1. 제안이유

- 질병관리청에서 발표한 「청소년건강행태조사」에 따르면 최근 5년 간 중·고등학교 학생(청소년)의 아침 식사 결식률은 매년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. 특히 2021년 기준 서울특별시 소재 중·고등 학생 아침 식사 결식률은 전국 평균치를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음.
- 이에 아침을 굶는 학생들의 건강과 학습력을 위하여 기숙사가 있는 학교뿐만 아니라 일반 학교에서도 조식이 제공될 수 있도록 조례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.

## 2. 주요내용

- 가. 학교의 장은 학생의 건강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조식을 제공할 수 있다는 조항 명시(안 제3조).
- 나. 교육감은 학교장의 신청을 받아 조식 운영에 따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는 조항 명시(안 제4조 1항).
- 다. 교육감은 효율적인 조식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또는 그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는 조항 명시(안 제4조 2항).

서울특별시조례 제 호

## 서울특별시교육청 조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학교에서 제공하는 조식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의 건전한 심신 발달 및 식생활 개선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"조식"이란 수업일의 아침시간에 주식 또는 부식 등을 학교에서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.

제3조(조식의 운영) 학교의 장(이하 "학교장"이라 한다)은 학생의 건강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조식을 제공할 수 있다. 이 경우 조식 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「초·중등교육법」 제31조에 따른 학교운영위원회 또는 「유아교육법」 제19조의3에 따른 유치원운영위 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결정한다.

제4조(조식 운영의 지원) ① 서울특별시교육감(이하 "교육감"이라 한다)은 학교장의 신청을 받아 제3조의 조식 운영에 따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.

② 교육감은 효율적인 조식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또는 그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